

# ADVENTURE

Online Travel Agent

## 모집형 기획여행 약관

---

본 약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한국어판입니다.

본 약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본어 원문이 우선됩니다.

# 모집형 기획여행 약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적용범위)

1.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이라한다)은 이 약관에서 정해집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일반적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가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약관보다 특약이 우선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모집형 기획여행」이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교통 및 숙식서비스 내용, 여행 요금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란, 일본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지칭합니다.
3. 이 약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대리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한 신용카드 회사 (이하 「제휴회사」라한다)의 카드 회원과 전화, 우편, 팩스등의 통신수단등의 신청으로 체결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입니다.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근거한 여행요금등의 채권 또는 채무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함으로써 여행자가 승낙하고,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 요금등을 제 12 조 제 2 항, 제 16 조 제 1 항, 제 19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서의 결제를 전제로한 내용이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입니다.
4. 이 약관에서 「전자 승낙 통지」란,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시, 정보 통신기술 이용방법중에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 팩스,전화등 기계적 장치 (이하 「전자 계산기등」 이라한다) 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등을 접속한 전기 통신 회로를 통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신용카드 결제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근거한 여행요금등의 지불일 또는 환불일을 말합니다.

### 제 3 조 (여행계약의 내용)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시 여행자에게 여행알선 및 안내, 교통, 숙박등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 (이하 「여행서비스」 라한다)을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계획의 수립, 실행 및 관리합니다.

### 제 4 조 (여행 업무 대행)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 이행시 여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국내 또는 해외의 다른 여행업자, 그외 보조업자에게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 2 장 계약 체결

### 제 5 조 (계약 신청)

1.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을 계약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입후, 당사가 따로 정한 금액의 신청금과 같이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와 통신계약을 신청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의 명칭, 여행출발일, 회원번호과 그외 사항 (이하 「회원번호등」 라 한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 1 항의 신청금은, 여행요금 또는 취소 수수료, 위약금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4.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여행자는 계약 신청시에 알려주시면, 당사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5. 전 항에 해당하는 신청에 있어서, 여행자의 특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제 6 조 (전화등에 의한 예약)

1. 전화, 우편, 팩시밀리등 그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예약이 접수됩니다. 예약의 시점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후, 당사가 정한 기간내에 전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정해진 사항대로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금을 제출 또는 회원번호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전 항에 정해진 사항대로 신청서과 신청금의 제출 또는 회원번호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체결 순위는 해당 예약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여행자가 제 1 항의 기간내에 신청금을 제출하지 않거나 회원번호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제됩니다.

### 제 7 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외 참가 여행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할 때
- (2) 명시한 최대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3)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4) 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 불가등으로, 여행요금등의 지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제휴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준하여 결제 하지 못할 경우
- (5) 여행자가 조직 폭력단원 및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등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될때
- (6) 여행자가 당사에 대해서 폭력적인 요구행동, 부당한 요구행동, 협박적인 언동 및 폭력을 휘둘렀을 때
- (7)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 또는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
- (8) 그외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때

### 제 8 조 (계약 성립시기)

1.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 5 조 제 1 항의 신청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사가 계약 체결의 승낙을 통지한 시점에서 성립합니다. 단, 전자 승낙 통지형태의 경우 해당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9 조 (계약서 교부)

1. 당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후, 여행자에게 여행 일정표,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요금, 그외 여행조건 및 당사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라 한다)을 교부합니다.
2.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으로 당사의 책임으로 여행자에게 제공될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에 따릅니다.

### 제 10 조 (최종 문서)

1. 전 조 제 1 항의 계약서에 여행 실시 일정, 교통 및 숙박장소의 명칭을 기재할수 없을 경우, 당 계약서에 이용 예정의 숙박장소 및 교통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계약서 교부후, 여행출발일 전날(여행 출발 7 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일)까지 당 계약서에 정해진 날까지 확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하 「최종문서」라 한다)을 교부합니다.
2. 여행자로 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문서 교부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3. 제 1 항의 최종 문서 교부후에는 전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책임으로 여행자에게 제공될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최종 문서에 따릅니다.

### 제 11 조 (정보통신 기술 이용방법)

1. 당사는 여행자의 승낙을 받고, 모집형 기획여행의 계약체결시에 여행자에게 교부한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요금 그외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및 최종 문서 교부에 있어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여행자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보관할수 없는 경우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보관 된 파일에 기록되고 (해당 여행자에게만 제공됨), 여행자가 확인한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12 조 (여행 요금)

1. 여행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요금을 계약서에 정해진 기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는 여행출발일 전에 신청금이외의 여행요금은 수령하지 않습니다.
2. 통신 계약 체결한 후에, 당사는 제휴회사 신용카드로 여행자의 서명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요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금의 카드 결제일은 여행계약이 성립한 날이며, 신청금을 제외한 여행요금은 여행 출발일 이후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이 됩니다.

## 제 3 장 계약 변경

### 제 13 조 (계약 내용 변경)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정부의 명령, 교통, 숙박시설 등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등, 여행자에게 신속하고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한 후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그외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내용 (이하 「계약내용」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 사태등 불가피할 시에는 변경한 후에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 14 조 (여행요금의 변경)

1. 모집형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교통기관의 운임·요금 (이하 「적용운임·요금」이라 한다)이 경제 정세의 변화등으로 모집시보다 대폭적으로 증감할 경우는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 15 일 이전에 여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제 1 항에 정해진 적용 운임·요금이 감액되었을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감액합니다.
4.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 실시에 필요한 비용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제공받지 못한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그외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이 증감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교통 숙박시설등의 좌석, 객실 그외 부대설비 부족으로 인해 증가했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당사는 교통, 숙박시설등의 이용인원에 의해 여행 요금 변경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성립후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여행자의 교체)

1.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인하에 계약상의 지위를 제 3 자에게 양도할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전항에 정해진 당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제 1 항의 계약상의 지위 양도는, 당사의 승인후 효력을 발생하며, 여행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 3 자는 해당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 제 4 장 계약 해제

### 제 16 조 (여행자의 해제권)

1. 여행자는 별표 제 1 에 정해진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한 후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는 제휴회사 신용카드로 여행자의 서명없이 취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전 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여행출발전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계약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 단 그 별표 제 2 상단에 기재된 사항, 그의 중요사항에 한합니다.
  - (2)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이 증액한 경우.
  -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교통, 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정부의 명령 그외 이유로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 14 조 제 1 항의 기일까지 최종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5)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3.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여행자의 사정이 아닌 이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당사가 통보한 경우는 제 1 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취소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 서비스의 제공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단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취소 수수료, 위약금 그외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 제 17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여행자에게 설명후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지정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외 참가 여행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할때.
  - (2) 질병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 또는 보호자의 부재등으로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3)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4)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5) 계약서에 기재된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
  - (6) 계약 체결시 명시된 여행 실시 조건 (스키여행의 경우 필요한 강설량 등)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경우.
  -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교통, 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정부의 명령 그외 사유로 여행 일정대로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불가등으로 여행 요금 또는 제휴회사 카드 회원 약관에 준하여 결제할수 없을 경우.
  - (9) 여행자가 제 7 조 제 5 호에서 제 7 호까지의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2. 여행자가 제 12 조 제 1 항의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일 다음날에 모집형 기획여행의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여행자는 전 조 제 1 항에 준하여 취소 수수료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제 1 항 제 5 호 사유에 의해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일본 국내여행은 여행출발일 13 일 이전 (당일 여행은 3 일 이전)까지, 해외 여행은 23 일 이전 (별표 제 1 에 규정한 성수기의 경우는 33 일 이전)까지 여행 중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18 조 (당사의 해제권 -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당사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여행출발후라도 여행자에게 설명후 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 또는 보호자의 부재등으로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 한 경우.
  - (2) 여행자가 승무원 또는 그외 당사의 지시를 어기고, 다른 여행자에게 폭행, 협박등으로 단체 활동의 규율을 위반하여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여행자가 제 7 조 제 5 호에서 제 7 호까지의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교통, 숙박시설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정부의 명령, 그외 사유로 여행 일정대로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2. 당사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단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등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한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취소 수수료, 위약금, 그외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여행자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 19 조 (여행 요금의 환급)

1. 당사는, 제 14 조 제 3 항에서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이 감액되거나, 전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여행 출발 전 변경분은 해제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환급, 감액 또는 여행 출발후 해제는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종료후 30 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각각 환급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 계약체결에 있어서 제 14 조 제 3 항에서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 요금이 감액되거나, 전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 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당사는 여행 출발 전 변경분은 해제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환급, 감액 또는 여행 출발후 해제는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종료후 30 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급할 금액을 통지하며, 그 통지일이 카드 결제일이 됩니다.
3. 전 2 항의 규정은 제 27 조 또는 제 3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여행자 또는 당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 20 조 (계약 해제후 귀국 협조)

1. 당사는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 출발후에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일절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제 5 장 단체 · 그룹 계약

### 제 21 조 (단체 · 그룹 계약)

당사는 같은 일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책임을 맡은 대표자 (이하 「계약 책임자」라 한다)를 정해 신청한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체결에 있어서 본 장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 22 조 (계약 책임자)

1.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에게 그 단체 · 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전면적으로 위임하며, 해당 단체 · 그룹에 관련된 여행업무 거래는 해당 계약 책임자와 진행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구성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와 구성원과의 사이의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 출발후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 제 6 장 여행 일정 관리

### 제 23 조 (여행 일정 관리)

제 23 조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자와 특약을 맺을수 있으며, 이 경우 특약이 우선됩니다.

- (1) 여행자가 여행중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모집형 기획 여행계약에 준하여 여행 서비스를 확실히 제공받을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2) 전 호의 규정에 준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행 일정의 변경은 당초의 여행 일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의 변경은 당초의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제 24 조 (당사의 지시)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기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 25 조 (여행 인솔자의 업무)

1. 당사는 여행 내용에 따라 인솔자 또는 그외 동행자에게 제 23 조 각호에 따른 업무 그외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에 부수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 항의 인솔자 또는 그외 동행자의 업무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 시부터 20 시까지로 정합니다.

### 제 26 조 (보호 조치)

당사는 여행중 여행자가 질병, 부상등으로 보호해야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 및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제 7 장 책 입

### 제 27 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제 4 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행을 의뢰한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단,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2 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교통, 숙박시설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정부의 명령, 그외 당사 및 당사의 사용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전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관한 제 1 항의 손해에 대해서 동 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일본 국내여행은 14 일 이내에, 해외여행은 21 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1 인당 15 만엔을 한도로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배상합니다.

### 제 28 조 (특별 보상)

1. 당사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특별 보상 규정을 정함으로써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중에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 손상등 손해를 가한 경우는 미리 정해진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해 드립니다.
2. 전 항의 손해에 대해 당사가 전 조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여 책임을 질 경우는, 당사가 지불해야하는 전 항의 보상금은 손해 배상 금액의 한도내에서 해당 손해 배상금으로써 지불됩니다.
3. 전 항에 규정하는 경우, 제 1 항에 근거하여 당사의 보상금 지불의무는 당사가 전 조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된 보상금을 포함) 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면됩니다.
4. 당사의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중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수령하여 당사가 실시한 모집형 기획 여행은 주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의 일부로써 취급됩니다.

### 제 29 조 (여행 일정 보장)

1. 당사는, 별표 제 2 상단에 기재된 계약 중요내용이 변경되었을때는 (아래 해당 사유로 인한 변경 (여행 서비스를 제공중의 교통 숙박시설등의 좌석, 객실 그외 부대설비 부족포함)의 경우는 제외) 여행요금에 별표 하단에 기재된 퍼센트이상의 변경 보상금을 여행 종료일 익일에서 30 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단,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가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경우는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아래 해당사유에 의한 변경

- A) 천재지변
- B) 전란
- C) 폭동
- D) 정부의 명령
- E) 교통, 숙박시설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 F) 당초의 운행계획에 벗어난 교통 서비스의 제공
- G)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2) 제 16 조에서 제 18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 여행 계획이 해제되어, 그 해당 부분에 의한 변경

2. 당사가 지급하는 변경 보상금액은, 여행자 1 인당 모집형 기획여행 1 건에 대해 여행대금에 당사가 정한 15%이상의 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 인당 변경 보상금액이 천엔미만일 경우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보상금을 지불후, 해당 변경이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준해 당사의 책임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여행자는 변경 보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불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여행자가 반환할 변경 보상금을 상쇄한 잔액을 지불해 드립니다.

### 제 30 조 (여행자의 책임)

- 1. 여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체결시, 당사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 의무 그외 계약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 3. 여행출발후,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만일 계약서와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당사, 당사의 사용인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 8 장 보험 가입등

### 제 31 조 (보험 가입등)

1. 당사는 사단법인 일본여행업 협회(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3-3) 의 회원사입니다.
2. 당사와 모집형 기획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 전 항의 사단법인 일본여행업 협회에 가입한 보험금 최대 1 억 3 천만엔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 4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단법인 일본여행업 협회에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동 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영업 보증금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 별표 제 1 취소 수수료 (제 16 조 제 1 항 관계)

### ( I ) 일본 국내여행 취소 수수료

구 분	취소 수수료
[1] 다음 항목, 제 3 항 및 제 4 항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a)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20 일전(당일 여행은 1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b~e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20% 이내
(b)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7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c~e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30% 이내
(c) 여행출발 전날에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40% 이내
(d)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e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50% 이내
(e) 여행출발후 취소 통보 또는 통보없이 불참가시	여행요금의 100% 이내
[2] 항공사가 웹사이트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항공권과 동일한 거래 조건에 의거한 항공권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약관으로, 계약서에 해당 항공권의 사용, 항공사 명칭, 항공사가 정한 취소 수수료, 위약금, 환불수수료 그외 항공 운송 계약 해제에 드는 비용 (이하, 「항공권 취소 수수료등」 이라 한다) 의 조건 (이하 「항공권 취소 조건」 이라 한다)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것.	
(a) 여행계약 체결 이후에 취소 통보시 (b~f 항목은 제외)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서 항공권 취소 조건이 적용된 항공권취소수수료등의 금액 (이하 「여행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라고 한다) 이내
(b)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20 일전(당일 여행은 1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c~f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20% 이내 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
(c)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7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d~f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30% 이내 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
(d) 여행출발 전날에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40% 이내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
(e)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f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50% 이내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
(f) 여행출발후 취소 통보 또는 통보없이 불참가시	여행요금의 100% 이내

<p>[3] 항공사가 설정한 항공권 (모집형 기획여행을 목적으로 한 여행 숙박비등 그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며, 항공운임 및 항공료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는 항공권 (1 인부터 이용가능한 「개인 포괄여행 운임」 에 한함)) 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약관으로, 계약서에 해당 항공권의 사용, 항공사 명칭, 항공사가 정한 취소 수수료, 위약금, 환불수수료 그외 항공 운송 계약 해제에 드는 비용 (이하, 「항공권 취소 수수료등」 이라 한다) 의 조건 (이하 「항공권 취소 조건」 이라 한다)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것.</p>	
<p>(a) 여행계약 체결 이후에 취소 통보시 (b~f 항목은 제외)</p>	<p>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서 항공권 취소 조건이 적용된 항공권취소수수료등의 금액 (이하 「여행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라고 한다) 이내</p>
<p>(b)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20 일전(당일 여행은 1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c~f 항목은 제외)</p>	<p>여행요금의 20% 이내 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p>
<p>(c)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7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d~f 항목은 제외)</p>	<p>여행요금의 30% 이내 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p>
<p>(d) 여행출발 전날에 취소 통보시</p>	<p>여행요금의 40% 이내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p>
<p>(e)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f 항목은 제외)</p>	<p>여행요금의 50% 이내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p>
<p>(f) 여행출발후 취소 통보 또는 통보없이 불참가시</p>	<p>여행요금의 100% 이내</p>
<p>[4] 전세 선박을 대절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p>	<p>해당 선박의 취소 수수료 규정에 따릅니다.</p>
<p><b>비고</b></p> <p>(1) 취소 수수료의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p> <p>(2) 위 표의 「여행출발후」란 별지 특별보상 규정 제 2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점」 이후를 말합니다.</p> <p>(3) 제 2 항 및 제 3 항의 경우, 해당 항공권이 당사가 항공사에 지불해야할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여행 계약 해제시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감액된 금액이 청구됩니다.</p>	

### (III)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

구분	취소 수수료
[1] 일본 출발 또는 도착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다음 항목부터 제 4 항의 여행계약은 제외)	
(a) 여행출발일이 성수기일 경우,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여행요금의 10% 이내

4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b~d 항목은 제외)	
(b)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3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c~d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20% 이내
(c) 여행출발 전전날 이후에 취소 통보시 (d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50% 이내
(d) 여행출발후 취소 통보 또는 통보없이 불참가시	여행요금의 100% 이내
[2] 일본 출발 또는 도착시에, 항공사가 웹사이트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항공권과 동일한 거래 조건에 의거한 항공권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약관으로, 계약서에 해당 항공권의 사용, 항공사 명칭, 항공사가 정한 취소 수수료, 위약금, 환불수수료 그외 항공 운송 계약 해제에 드는 비용 (이하, 「항공권 취소 수수료등」 이라 한다) 의 조건 (이하 「항공권 취소 조건」 이라 한다)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것. (다음 항목의 여행 계약은 제외)	
(a) 여행계약 체결 이후에 취소 통보시 (b~e 항목은 제외)	여행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이내
(b) 여행출발일이 성수기일 경우,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4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c~e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10% 이내 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
(c)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3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d~e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20% 이내 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
(d) 여행출발 전전날 이후에 취소 통보시 (e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50% 이내또는 여행 계약 취소시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중 더 큰 금액 이내
(e) 여행출발후 취소 통보 또는 통보없이 불참가시	여행요금의 100% 이내
[3] 전세 항공기를 대절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a)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9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b~d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20% 이내
(b)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3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c~d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50% 이내
(c)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20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시 (d 항목은 제외)	여행요금의 80% 이내
(d) 여행출발 전날로부터 3 일전 이후에 취소 통보 또는 통보없이 불참가시	여행요금의 100% 이내
[4] 일본 출발 또는 도착시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	해당 선박의 취소 수수료 규정에 따릅니다.
<b>(주)</b> 「성수기」란, 12 월 20 일 ~ 1 월 7 일, 4 월 27 일 ~ 5 월 6 일, 7 월 20 일 ~ 8 월 31 일입니다.	



**비고**

- (1) 취소 수수료가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위 표의 「여행출발후」란 별지 특별보상 규정 제 2조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점」 이후를 말합니다.
- (3) 제 2항의 경우, 해당 항공권이 당사가 항공사에 지불해야할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여행 계약 해제시 항공권 취소 수수료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감액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 별표 제 2 변경 보상금 (제 29 조 제 1 항 관계)

변경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변경	1 건당 비율(%)	
	여행 출발전	여행 출발후
(1)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출발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에 기재된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 (레스토랑 포함) 그외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에 기재된 교통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가 더 낮은 요금으로 변경 (변경후의 등급 및 설비의 총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 한함)	1.0	2.0
(4) 계약서에 기재된 교통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에 기재된 일본국내의 여행 출발지의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의 공항의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	1.0	2.0
(6) 계약서에 기재된 일본국내와 해외 구간이 직항편에서 환승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	1.0	2.0
(7) 계약서에 기재된 숙박시설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8) 계약서에 기재된 숙박시설의 객실 종류, 설비, 전망 그외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9) 전 각 변경 항목중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상품명에 관한 변경	2.5	5.0

- 주 1) 「여행출발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해서 여행출발일의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보한 경우를 말하여, 「여행출발후」란, 해당 변경에 대해서 여행출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보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 주 2) 최종문서가 교부되면, 「계약서」를 「최종문서」로 확인한 후에 위 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최종문서의 기재 내용 또는 최종문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는 각각의 변경당 1 건으로 취급합니다.
- 주 3) (3) 또는 (4)에 해당하는 변경의 교통기관이 숙박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는, 1 박당 1 건으로 0 취급합니다.
- 주 4) (4)에 해당하는 교통기관의 회사명 변경의 경우, 더 높은 등급 또는 설비로 변경되었을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5) (4) 또는 (7),(8)에 해당하는 변경이 1 회 승차, 승선 또는 1 박하는중 복수 발생하여도 1 회의 승차, 승선 또는 1 박당 1 건으로 취급합니다.
- 주 6) (9)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1) ~ (8)의 비율이 아니라 (9)의 비율이 적용됩니다.